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완섭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상법」에서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및 제3조)

-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공고 방법과 연도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체계적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 내용을 정하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생산하는 방법을 규정함.

다.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기후예측 정보와 이상기후 전망 및 기후전망 정보의 세부적인 생산 내용과 방식을 규정함.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신청, 심사 등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라.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부처 간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활용 방법을 규정함.

마.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기상청장이 지원할 기후위기 계획 또는 대책을 추가하여 정하고, 감시·예측정보와 조사·연구된 결과를 이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수행할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

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제도 도입(안 제17조)

- 교육사의 자격요건과 자격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입법예고 전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

다.

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측망(이하 “해양·극지 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관측망의 확대 및 조정 등 변경을 위한 조사·분석
 2. 관측망의 구축·운영계획 수립 및 현황점검
 3. 그 밖에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4. 정선해양조사 및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5. 극지 환경생태계 관측망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관측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국가해양관측망 및 이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관측망 중 동일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관측망을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기후관측망으로 지정할 수 있

다.

제5조(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기상법」 제2조제4호부터 제4의4호까지의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정보를 분석·생산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분석·생산해야 한다.

1. 해수온, 염분, 해류, 해수면 높이, 해빙, 용존산소, 해양 서식지, 부유생물 등 기후요소
2. 기후체계 내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기후요소의 상호작용
3.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열파, 빙하 유실, 극한해수면상승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④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관하여 수집·분석·생산한 감시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각각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①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시한 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엘니뇨·라니냐 등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

②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후전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의 기온 및 강수량
2. 연 기온 및 강수량
3. 근미래(1년 초과 10년 이하) 기온 및 강수량
4. 계절의 엘니뇨·라니냐 등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

③ 법 제8조제4항의 기후예측 정보의 내용은 해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 해빙 면적, 용존산소, 부유생물 등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요소와 해양순환 등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으로 하고, 정보의 종류는 1개월, 3개월 전망과 기후전망으로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생산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한다.

제7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기준(이하 “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2.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전자적 파일형태 자료
4. 그 밖에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참고자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2.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① 기

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생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알릴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제공의 범위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활용하여 품질이 관리된 정보로 한다.

제9조(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3항제4호 및 법 제16조제1항·제2항을 위하여 이 영 제2항의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해양·극

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기후변화에 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이하 “해양·극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제4항의 해양·극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통합제공시스템 또는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공유를 위해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연계할 수 있는 정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요소, 승인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영향평가정보 등
2.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 등
3. 기타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활용 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 등을 말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등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 중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계획 또는 대책

제11조(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그 밖에 「민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2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 또는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하여 별표 2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면 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은 기상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④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14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세계기상기구의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GPC, Global Producing Centres for long-range forecasts)
2. 세계기상기구의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LC-LRFMME,

Lead Centre for long-range forecast Multi-Model Ensemble)

3. 세계기상기구의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4. 그 밖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정된 기후·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센터 운영을 위한 자료 생산, 관리, 표준 등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5조(대응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소속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대응협의회(이하 “대응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IPCC 주요 의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 결정
2. 정부와 민간의 IPCC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3. IPCC 보고서의 국내 정책 반영 촉진
4. 그 밖에 대응협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대응협회의 운영) ① 대응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응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기상청장은 대응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의 전문가 회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권한을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의 운영
2.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의 운영(소관 표준기상관측소, 해양기상관측 업무로 한정한다)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업무의 품질관리(소관 지구대기감시 관측에 한정한다)
4.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 생산
5. 법 제11조에 따른 기후 · 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정보의 대국민 제공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정보의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8. 법 제17조에 따른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 기술로 한정한다)의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9.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정 · 설립된 기후 · 기후변화의 감시 관련 센터의 운영(소관 센터에 한정한다)
- ③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기상위성 관측망으로 한정한다)

의 구축·운영

2. 법 제6조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자료(기상위성 관측 관측망을 통한 관측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한 품질관리
 3. 법 제7조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기상위성 관측 관련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의 수집·분석·생산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기상위성 관측 관련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의 대국민 제공
 5. 법 제17조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기술(기상위성 관측 관련 소관 기술로 한정한다)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양·극지분야의 관측망 중 해양환경측정망, 정선해양조사 및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구축·운영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 중 해양환경측정망, 정선해양조사 및 해양수산환경 관측망을 통한 감시정보 분석·생산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 중 해양생태계 및 수산분야와 관련된 기후예측 정보 생산
 4. 법 제17조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 기술로 한정한다)의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

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양·극지분야의 관측망 중 조석·해류 등의 해양관측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 중 국가해양관측망 및 조석·해류 등의 해양관측을 통한 감시정보 분석·생산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 중 해수면 높이 등과 관련된 기후예측 정보 생산
4. 법 제17조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 기술로 한정한다)의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으로 한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 및 기후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기후변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양·극지분야의 관측망 중 해양생태계종합 조사, 극지 환경생태계 관측망,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극지 분야의 관측망 구축·운영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기후변화 감시정보 분석·생산(제19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감시정보 분석·생산은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 생산(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예측 정보 생산은 제외한다)
 4. 법 제17조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 기술로 한정한다)의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 ③ 제2항의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기후변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해양 및 기후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④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8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19조제1호의2 및 제2호, 제23조제6항의 제1호 및 제2호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인력 5명 이상 가. 기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기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2년 이상인 사람 다. 기상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4년 이상인 사람 라. 기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시설	기후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산 면적이 50m ² 이상의 사무실
업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기관 가. 기후 분야를 3년 이상 연구 나. 기상 분야를 5년 이상 연구
비고: 1. “기후 분야”란 기후학, 대기과학, 대기환경학, 해양학 등을 말한다. 2. “기후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소관 업무 중, 법 제2조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 기후변화감시, 기후예측, 기후 변화 예측 또는 기후연구 업무를 말한다. 3.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한다.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인력 5명 이상 가. 기후·해양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기후·해양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2년 이상인 사람 다. 기후·해양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4년 이상인 사람 라. 기후 및 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시설	기후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산 면적이 50㎡ 이상의 사무실
업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기관 가. 기후 분야를 3년 이상 연구 나. 해양 분야를 5년 이상 연구
비고: 1. “기후·해양 분야”란 기후학, 대기과학, 해양학 등을 말한다. 2. “해양 관련 분야”란 해양수산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해양·극지 기후변화 관측, 해양·극지 기후변화감시, 해양·극지 기후예측, 해양·극지 기후변화 예측 또는 해양·극지 기후연구 업무를 말한다.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시정 명령의 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행정처분기준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17조 제5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17조 제5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17조 제5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 취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제17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 요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나. 기후기후변화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기후·기후변화교육 관련 업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기후변화과학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업무 또는 기후변화과학교육 업무를 말한다.
2.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단체명 (설립허가기관 및 허가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인력확보 현황		
시설확보 현황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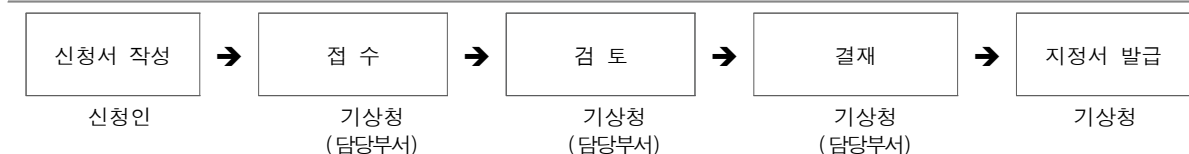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처리절차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단체명	
	(설립허가기관 및 허가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인력확보 현황		
시설확보 현황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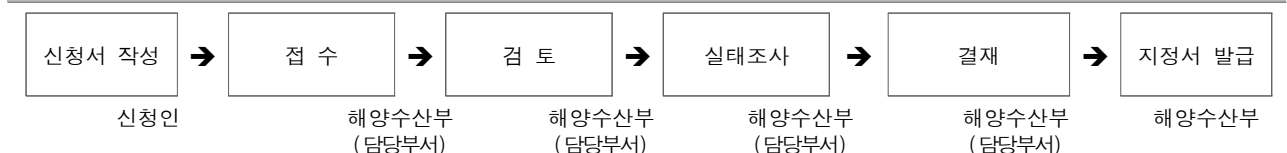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 또는 단체의 규약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처리절차



제 호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 지정서

1. 단체명
2. 대표자의 성명
3. 대표자의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5. 사무소 소재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제 호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 지정서

1. 단체명
2. 대표자의 성명
3. 대표자의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5. 사무소 소재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기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7376